

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1. 11. .
발 의 자	이선우 의원 외 5명

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(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.

발 의 자 : 이선우 · 김재우 · 박교상
송용자 · 이지연 · 홍난이 의원
(6인)

1. 제안이유

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 및 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나.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다. 지원사업의 범위(안 제7조)
- 라. 주거지원 정책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기 타 : 해당 사항 없음

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-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“가정 밖 청소년등”이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.
 - 2. “퇴소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.
-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

-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)

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

구든지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

-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추진목표와 기본방향
 2.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3.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구미교육지원청, 구미경찰서,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

-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, 방법,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사업)

-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1.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등의 생활 지원
 2.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
 3.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
 4. 자립 및 자활 지원
 5.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의 법률지원
 6.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

7.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 및 홍보)

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9조(주거지원)

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지역사회 거주를 위하여 주거지원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주거지원정책 수립시 가정 밖 청소년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

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(이하 “청소년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쉼터: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2. 청소년자립지원관: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
3. 청소년치료재활센터: 학습·정서·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·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
4. 청소년회복지원시설: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가정 밖 청소년등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 및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소요가 예상됨(안 제7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, 제2호에 해당함.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가정 밖 청소년등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세부사업계획 수립·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어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구체적인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

4. 작성자

-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지원계 허수정(054-480-2722)